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121-165
<https://doi.org/10.29212/mh.2020..115.1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시대 密符의 제도와 운용

노인환*

1. 머리말
2. 밀부의 시행과 변화
3. 밀부의 형태와 改造
 - 가. 밀부의 형태
 - 나. 밀부의 改造와 교체
4. 밀부의 운용
 - 가. 밀부관의 유형과 변화
 - 나. 밀부의 전달과 반납
 - 다. 밀부의 인수인계 관리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符信은 국왕이 군사지휘관에게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대신이나 將帥 등을 긴급하게 부를 때에 사용하였던 信標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이다. 부신에 대하여 『經國大典註解』에서 ‘符는 돕는다는 것을 말하고 양쪽이 서로 돕고 합쳐서 차이가 없는 것이며, 또한 돕는 것이니 신표를 돕는 바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¹⁾ 이러한 부신은 국왕의 명령이나 군사지휘관의 관직에 따라 密符·兵符·命召·虎符 등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密符는 국왕이 지방의 군사지휘관에게 부임지의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부신이다. 국왕은 左右로 반을 나누는 밀부 중에서 左隻을 궁궐에 보관하였고, 右隻을 군사지휘관에게 내려주었다. 밀부를 수취하는 군사지휘관인 密符官은 각 도의 관찰사·절도사·유수·통제사·방어사·총융사 등이 있었다.

국왕이 외적의 침입이나 역적의 모반 등의 비상시에 명령을 내려 병력을 동원할 때에 밀부의 左隻을 밀부관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관원은 좌우를 합쳐서 확인한 후에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것은 병력의 동원과 같은 중대한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의 군대를 통제하여 지방에서 함부로 병력을 출동하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밀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밀부는 병력의 동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印信과 함께 군사지휘관의 군사권을 상징하였고, 군사지휘관을 교체할 때에 인수인계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조선시대 밀부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인 密符諭書에 대한 연구, 승정원의 밀부 관련 有旨에 대한 연구, 밀부와 관련된 처벌 연구가 있다. 밀부유서에 대한 연구는 諭書의 유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 밀부유서는 밀부관에게 밀부와 함께 전달하는 문서이며, 유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된 문서이다. 현전하는 밀부유서를 통해 변화 양상, 발급과 전달, 재발

1) 『經國大典註解』後集 吏典 六曹條 符信. “符之爲言扶也, 兩相扶合, 而不差也, 又輔也, 所以輔信.”

급, 告身·敎書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가운데 밀부에 대해 소개하였다.²⁾ 밀부 관련 유지에 대한 연구는 유지의 유형과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밀부 관련 유지를 통해 국왕이 내린 명령을 연구하였다.³⁾ 밀부와 관련된 처벌 연구는 조선시대 禁推의 대상 중에서 밀부로 인해 금추되는 규정과 사례를 연구하였다.⁴⁾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병력의 동원을 상징하는 밀부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밀부와 관련된 고문서와 사료를 통해 밀부의 시행 과정과 제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법제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밀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현전하는 밀부의 사례를 살펴보고, 밀부가 改造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밀부를 수취하는 밀부관의 유형과 변화 양상, 밀부의 전달과 반납 과정, 밀부의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밀부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비상시 병력을 동원하는 과정 속에서 밀부의 역할과 부신 중에서 밀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노인환, 「조선시대 觀察使 敎書와 諭書의 문서 행정과 운용」, 『古文書研究』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3)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奎章閣』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4) 김진옥,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36, 한국고전번역원, 2010.

2. 밀부의 시행과 변화

조선시대 밀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전하는 고문서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 적어도 세조 연간에 시행되었다. 1443년(세종 25)에 諭書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밀부와 관련된 기록은 수록되지 않았다.⁵⁾ 그 대신 1457년(세조 3)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 密符諭書에서 밀부에 대한 기록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457년(세조 3)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 密符諭書



* 출처: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에게 내리는 諭書

경은 한 지방을 위임 받았으니 맡은 임무가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 일을 일으켜 機微에 대응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적을 제압하는 것은 한결같이 응당 평상시의 일이며, 본래 옛날 법도에 있다. 생각

5)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1443) 8월 6일(무자).

건대 흑시 내가 경과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親押한 제14 밀부를 내려주니 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명령한다.

천순 원년(1457, 세조3) 3월 12일.⁶⁾

이 문서는 1457년 3월 12일에 세조가 平安道都節制使에 임명된 이윤손에게 밀부와 함께 내려준 밀부유서이다. 이윤손 밀부유서는 앞부분에 평안도도절제사로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이나 반란의 기미에 대응하고, 백성을 돌보고 적을 제압하는 등의 임무가 수록되었다. 이어서 국왕과 이윤손이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생길 경우에 밀부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는 것과 직접 押한 제14부의 밀부를 내려주니 잘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윤손 밀부유서를 통해 세조 연간에 지방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유서와 함께 국왕이 親押한 밀부를 내려주는 밀부 제도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 연간에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밀부를 내려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460년(세조 6) 1월에 세조는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된 金脩에게 밀부유서와 함께 제24부의 밀부를 내려주었고,⁷⁾ 1462년(세조 8) 9월에 황해도관찰사 辛永孫에게 제11부의 밀부를 내려주었다.⁸⁾ 예종 연간에는 밀부의 칭호에 대하여 조정의 논의가 있었다. 1469년(예종 1) 9월 16일에 밀부의 칭호에 대하여

6) “諭平安道都節制使李允孫. 卿受委一方 體任匪輕. 凡發兵應變, 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 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 則非密符, 莫可施爲. 故賜親押第十四密符, 卿其受之. 故諭. 天順元年三月十二日.”

7)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1460) 1월 7일(을유). “諭黃海道觀察使金脩曰, 卿受委一方, 體任匪輕. 凡發兵應變, 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 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 則非密符, 莫可施爲. 故賜親押第二十四密符, 卿其受之.”

8)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1462) 9월 12일(계묘). “諭黃海道觀察使辛永孫曰, 卿受委一方, 體任匪輕. 凡發兵應變, 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 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 則非密符, 莫可施爲. 故賜親押第十一密符, 卿其受之.”

대신들이 의논하여 중국의 예에 따라 第一·第二로 부르게 하였다.⁹⁾

조선 전기에 밀부는 새로 임명된 관찰사·절도사에게 군사권을 운용하는 용도 이외에 실제로 군사를 동원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1461년(세조 7) 9월에 세조는 平安道都觀察使 金碩과 都節制使 金繼孫에게 의주 부근의 여러 고을에서 精勇한 甲士 150명을 더 뽑아서 聖節使를 호송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내려 보낸 밀부를 참고하여 증험할 것을 명하였다.¹⁰⁾ 도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밀부를 통해 입직한 군사를 동원하게 하였다. 1491년(성종 22) 4월에 한성부의 中部 貞善坊에서 불이 났을 때에 선전관에게 밀부를 가지고 달려가서 입직한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을 끄게 하였다.¹¹⁾ 또한 국왕은 行幸에서 병력을 동원할 할 때에도 밀부를 사용하였는데, 1528년(중종 23) 10월에 중종이 여주에 行幸할 때에 標信과 밀부를 함께 사용하여 군령을 전달하였다.¹²⁾ 조선 전기에 밀부 관련 기록이 소략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밀부가 시행된 초기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1469) 9월 16일(병신). “左副承旨韓繼純啓, 密符何以稱號. 命大臣議之. 鄭麟趾·鄭昌孫·韓明滄·洪達孫·金碩等議, 依中國例, 稱第一·第二. 從之.”

10)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1461) 9월 15일(임자). “平安道都觀察使金碩·都節制使金繼孫等馳啓, … 回諭碩·繼孫曰, 今見卿啓本, 具悉趙三波等欲於東八站路間邀截. 此雖不可信, 然不可不爲之備. 卿審同封事日施行. 一, 參驗今送密符, 加抄義州旁近諸邑精勇甲士一百五十名, 護送聖節使.”

11)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1491) 4월 18일(계해). “中部貞善坊家失火. 傳曰, 速令宣傳官持密符馳往, 使部將率入直軍士一百名救之.”

12)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1528) 9월 19일(무자). “傳于政院曰, 常時行幸時, 凡軍令, 非但以標信, 亦或以密符諭之也. 今此驪州行幸時, 亦欲如此爲之也. 但成廟朝, 先以諭書下諭于左右廂而後, 用密符. 今亦以諭書先諭而後, 用密符乎. 抑密符與宣傳標信, 一時竝用乎. 此意議于兵曹.”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1528) 9월 22일(신묘). “傳于政院曰, 左右大將·衛將處, 以用密符事, 爲諭書下諭. 標信與密符相用, 若隔岸隔山之處, 則以密符下諭, 一依成宗朝故事爲之.”

이후 선조 연간에 관찰사·절도사 등에게 내리는 밀부와 함께 비상시에 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를 추가로 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1660) 3월 13일(무진).

영의정 鄭太和가 아뢰기를, “時任三公이 密符를 차는 것은 옛날에 규례가 없었으나 기축년(1589)에 비로소 命召하는 牌가 있었습니 다. 신이 일찍이 신의 조부 昌衍의 말을 들으니, 무릇 어두운 밤에 命召할 때는 밀부로 증험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¹³⁾

㉡ 『광해군일기[중초본]』 57권, 광해군 13년(1621) 8월 17일(병술).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신 朴承宗이 기축년(1589)에 병조낭청으로 궐내에 입직하였는데, 밤 2경 즈음에 海西에서 역적의 보고가 있었 습니다. 신이 이를 문틈으로 入啓하고 여러 대신들을 命召하여 밤 에 引見하였는데, 그 때 선조대왕께서 密符를 만들기를 명하여 야간에 대신들을 命召할 때의 용도로 마련하였습니다.”¹⁴⁾

㉢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1590) 2월 12일(갑신).

대신을 비상시 부를 때에 뜻밖의 변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密符 3隻을 새로 만들도록 명하여 1隻은 대신에게 주고 2隻은 大內에 보 관하였다가 비상시 대신을 부를 때에 密符를 맞추어 증험하였다. 아울러 병조판서와 8도의 감사·병사·수사에게도 주었다.¹⁵⁾

13)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1660) 3월 13일(무진). “太和曰, 時任三公之佩密符, 古無是規, 己丑年始有命召之牌. 臣曾聞臣祖父昌衍之言, 凡昏夜命召之時, 有符驗之規.”

14) 『광해군일기[중초본]』 57권, 광해군 13년(1621) 8월 17일(병술). “備邊司啓曰, 臣承宗, 以己丑年, 以兵曹郎廳, 入直闕內, 二更分 海西逆報. 從門隙入啓, 諸大臣命召, 夜分引見, 其時宣祖大王命造密符, 以備夜間命召大臣之用矣.”

15)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1590) 2월 12일(갑신). “大臣非時宣召時, 慮有意外之變, 命新造密符三隻, 一隻則付大臣, 二隻則藏內, 非時宣召時, 合符爲驗. 並給兵曹判書及八道監兵·水使.”

㉠·㉡·㉢의 사례에서 선조 연간에 밀부를 통해 대신을 命召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영의정 정태화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삼정승이 밀부를 차는 것은 옛날에 규례가 없었으나 기축년인 1589년(선조 22)에 대신을 명소하기 위해 밀부를 사용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에서 박승중은 기축년에 海西 지방에서 역적의 보고가 있을 때에 선조가 대신을 인견한 후에 밀부를 만들어서 대신을 명소할 때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과 ㉡에서 언급하는 기축년은 1589년으로 당시 정여립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선조는 밀부를 통해 야간에 대신들을 명소하였다. 이후 1590년(선조 23) 2월에 선조는 대신을 비상시에 부를 때 의외의 변고를 염려하여 밀부 3隻을 새로 제작하였다. 이때 좌2척은 대내에 보관하고, 우1척은 대신에게 주어 비상시에 대신을 부를 때 밀부를 맞추어 확인하였다. 또한 선조는 대신 이외에 병조판서와 팔도의 감사·병사·수사에게도 밀부를 내려 주었다. 이후 국왕이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어 야간에 삼정승과 병조판서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는 ‘命召’라는 符信으로 대체되었다.¹⁶⁾

밀부 제도는 조선 초기에 시행되어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쳤지만, 법제화 과정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 「兵典」 符信 항목에는 밀부 관련 조항이 수록되지 않았고, 1746년(영조 22) 반포된 『續大典』에 처음으로 밀부 관련 조항이 수록되었다. 『속대전』에는 밀부의 반납 조항 및 그와 관련된 처벌 조항과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관원의 밀부에 대한 조항이 수록되었다.¹⁷⁾ 1785년(정조 9)에 반포된 『大典通編』에는 밀부의 형태, 밀부

16) 『大典會通』 「兵典」 符信. “《增》… 命召 [體圓, 一面書命召·某職, 傍書年號·月·日, 一面御押, 中分], 右一隻. 頒于三大臣·左右捕將·三軍門大將·兵曹判書·兼兵曹判書, 左二隻, 藏于大內, 若有機密重事, 昏夜命召, 則合符舉行.”

17) 『大典會通』 「兵典」 符信. “《續》… ○ 將臣·藩臣·帥臣遞歸, 密符·命召必親納政院. [或無職或有故者, 親納闕外. 不遵命者, 卿宰重推, 通政禁推, 守職者以本資論.]”

에 새겨진 내용, 密符官, 밀부 운용 방식 등의 조항이 수록되었다. 특히 『대전통편』에는 관찰사·통제사·유수·절도사·방어사 등 군사권을 가진 지휘관을 밀부관으로 규정하였다.¹⁸⁾ 1867년(고종 4)에 반포된 『六典條例』에는 밀부에 대해 승정원에서 啓稟해야 하는 조항을 수록하였다.¹⁹⁾ 이렇게 법전에 규정된 밀부 제도는 1895년(고종 32)까지 시행되었다. 1895년 3월 1일에 고종은 五都留守·各道監司·按撫使·兵水使·防禦使 등에게 밀부와 병부 등 符信 제도를 폐지하고, 각도에 있는 밀부와 병부를 모두 올려 보내게 하였다.²⁰⁾

조선 초기에 유서와 함께 시행된 밀부 제도는 용도와 수취 관원에서 변화 과정을 거쳤고 영조 연간에 밀부 관련 조항이 법전에 수록되어 조선 후기까지 시행되었다. 밀부 제도의 변화 속에서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지방의 지휘관에게 병력의 동원과 운용을 위해 발급한 符信이라는 점은 한결같이 유지되었다.

○ 身帶將任者, 無論佩召·佩符, 毋得處城外. [受由下鄉者, 密符, 非有特教, 不得仍佩往來.] ”

18) 『大典會通』 「兵典」 符信. “《增》 … 密符 [體圓, 一面書第幾符, 一面御押, 中分], 右一隻, 頒于觀察使·統制使·守摠兩使 [《補》 守禦使, 今爲廣州留守.] ·兩都 [《補》 四都] 留守·節度使·防禦使, 左二隻, 藏于大內, 凡有發兵·應機等事, 合符防奸, 一依所受諭書舉行.”

19)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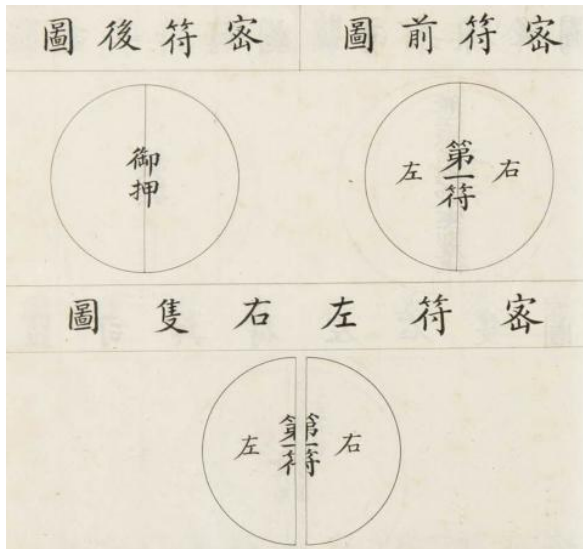
20) 『승정원일기』 3056책 고종 32년(1895) 3월 1일(임신). “摠理大臣·內務大臣·軍務署理大臣奏, 五都留守·各道監司·按撫使·兵·水使·防禦使所佩密兵符及各邑·鎮守令·邊將兵符, 實地符驗, 便同虛文, 自今頒符之例廢止, 而各道現存密兵符, 令各該監營都聚上送, 而監·留·兵·水營所在馬牌, 一體收上, 何如. 奉旨, 依允.”

3. 밀부의 형태와 改造

가. 밀부의 형태

조선시대 밀부의 형태는 고종 연간에 편찬된 『寶印符信總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인부신총수』에는 밀부 前面과 後面의 도판을 수록하고 하단에 밀부의 재질, 규격, 보관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密符



*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91쪽.

密符는 山柚子로 만들고 모양·지름·두께가 命召와 동일하다. 前面에 第一符를 새기고 第一符부터 第四十五符까지 차례로 새기며 左隻에 左자를 새기고 右隻에 右자를 새긴다. 後面에 御押을 새기고 모두 붉은

색을 채운다. 수량은 45部이고 매 部는 左 2척, 右 1척이며 우 1척을 받아서 차고 鹿皮囊이 있다. 좌 2척은 궤내에 보관하고 命召橫 안에 함께 봉하여 넣으며 受納冊子도 또한 동일하다. 八道監司, 4都의 留守, 總戎使, 統制使, 8명의 兵使, 6명의 水使, 12명의 防禦使가 교대할 때에 密匣을 啓請하고 修正하여 넣는다. 밀부 9部를 더 만들어 46符부터 54符를 차례로 새겨서 별도로 密匣橫에 봉하여 넣으며 처음에 만든 밀부가 부족할 때에 사용한다.²¹⁾

밀부는 山柚子로 만들었고, 모양·지름·두께가 命召와 동일하여 모양이 원형이며 지름은 3촌 3푼, 두께는 3푼 5리이다.²²⁾ 밀부의 前面과 後面에는 모두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고 붉은 색을 채웠다. 전면의 중앙에는 第一符에서 第四十五符까지 차례대로 새기고 左隻에는 左자를, 右隻에는 右자를 새겼으며, 후면의 중앙에는 국왕의 서명인 御押을 새겼다. 밀부는 매 部마다 左隻 2개, 右隻 1개를 제작하여 좌척 2개는 命召橫 안에 受納冊子와 함께 봉하여 넣었고, 우척 1개는 밀부관에게 내려 주었다. 밀부관은 밀부를 반달 모양의 密符匣에 넣고 다시 황색 密符囊에 넣어 철릭이나 군복에 차고 다녔다.²³⁾

21) “密符, 以山柚子爲之, 體經厚同命召. 前面刻第一符, 自第一符至四十五符, 次第刻之, 左隻刻左字, 右隻刻右字. 後面刻御押, 俱填紅. 數爲四十五部, 每部左兩隻右一隻, 右一隻受佩, 有鹿皮囊. 左兩隻內上, 同爲封入於命召橫中, 受納冊子亦同. 八道監司·四都留守·總戎使·統制使·八兵使·六水使·十二防禦使, 邊代之際, 啓請密匣, 修正以入. 加造密符九部, 自四十六符至五十四符, 次第刻之, 別爲封入於密匣橫, 而元符不足時用之.”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91쪽.

22) “命召, 以山柚子爲之, 體圓, 經三寸三分, 厚三分五里, … 有鹿皮囊, 左兩隻內上, 封盛橫子, 受納年月日成置冊子.” 서울대학교 규장각, 위의 책, 1994, 86쪽.

23) 密符囊은 호조에서 만들어 주었고 밀부를 반납할 때 밀부와 密符囊을 함께 密匣에 넣었다.

『승정원일기』 904책 영조 15년(1739) 12월 27일(기해). “上曰, 密符囊, 何以入於密匣乎. 聖應曰, 監兵使授符時, 戶曹製給, 還納時, 並囊入之矣. 上曰, 密匣修正後, 空囊入之, 怪矣. 始炯曰, 戶曹, 以密符數, 製囊入之矣. 上曰, 依密符數製囊, 則必有餘剩矣.”

<그림 3> 密符 第二十六符 右隻·密符匣·密符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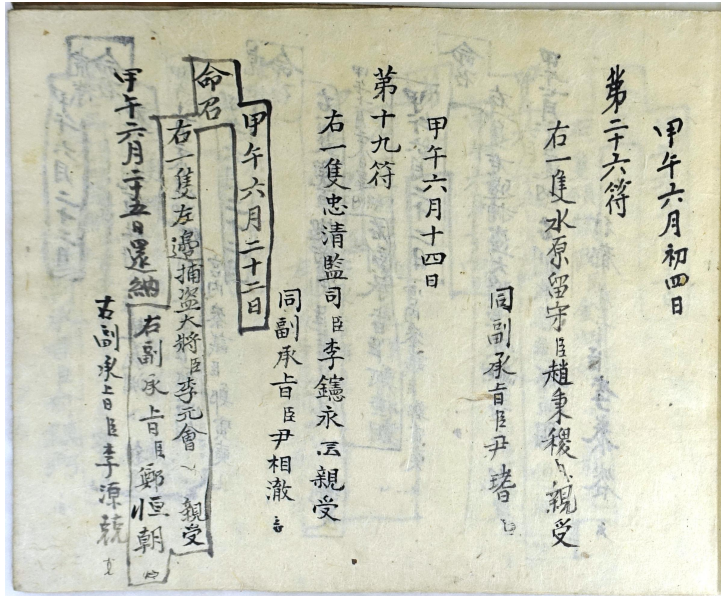


* 출처: 육군박물관, 『조선의 군사신호체계 「形名」』, 2014, 183쪽.

이러한 밀부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밀부 제26부의 右隻과 密符匣, 密符囊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命召虎符密符冊』²⁴⁾에 따르면 1894년(고종 31) 6월 4일에 水原留守 趙秉稷이 제26부 밀부를 직접 받고 着名하였다. 당시 동부승지 尹璫가 밀부의 전달을 담당하고 착명하였다. 『명소호부밀부책』에는 조병직이 제26부를 반납한 내용이 없었고, 밀부 제도는 1895년(고종 32)까지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제26부 밀부의 우척은 고종이 수원부유수 조병직에게 내린 밀부로 추정된다.

24) 『命召虎符密符冊』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K2-3645' 2冊(1888~1895년)이 筆寫本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지사항은 “線裝 不分卷2冊(32張;12張) :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 25.6×34.2cm, 22.9×30.4cm”이다.

<그림 4> 1894년(고종 31) 6월 4일 密符 제26부 趙秉稷 親受



* 출처: 『命召虎符密符冊』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45)

나. 밀부의 改造와 교체

밀부는 선대의 국왕이 승하하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에 반드시 改造되었다.²⁵⁾ 밀부의 후면에 국왕의 御押을 새겼기 때문에 선대 국왕의 어압이 있는 밀부를 수거하고 새로운 국왕의 어압을 새겨서 제작하였다. 국왕은 宣傳官을 밀부관에게 과견하여 이전에 받은 밀부를 합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받은 후에 새롭게 제작된 밀부를 내려주었다. 이러한 밀부의 개조와 교체는 성종 때부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470년(성종 1) 1월에 승정원에서는

25)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密符四十五. [體圓一面書第幾符, 一面御押, 中分.] 詳見符信摠圖. [大喪後改造.]”

여러 도의 관찰사·절도사 등이 받아 간 밀부에 대해 개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성종이 윤허하여 밀부를 개조하였다.²⁶⁾ 1494년(연산군 1) 3월에 연산군도 밀부를 새롭게 제작한 후에 선전관 李之房·李長生·辛允武 등을 8道에 보내서 밀부를 내려주었다.²⁷⁾ 1674년(숙종 즉위년) 9월에는 새로 제작한 밀부를 교체할 때에 선전관을 파견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각 도에 1인을 보내서 차례로 밀부를 전해 준 경우도 있었다.²⁸⁾

조선 후기에 밀부의 개조와 교체 과정은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啓辭를 올려서 啓下를 받았다.²⁹⁾ 이어서 밀부의 개조와 교체에 대한 국왕의 명령을 승정원에서 有旨로 작성한 후에 밀부관에게 유지를 전달하였다.³⁰⁾ 이와 관련해서 1648년(인조 26)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에게 내린 告身·諭書와 1649년(효종 즉위년) 홍진문에게 내린 유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진문은 1648년(인조 26) 6월 9일에 수원부사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경기좌방어사를 겸직하였다. 같은 달 29일에 인조에게 하직할 때에 밀부유서와 밀부 제4부를 받고 수원부에 부임하였다.³¹⁾

26)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1470) 1월 19일(무자). “承政院啓曰, 諸道觀察使·節度使等受去密符, 請改造. 從之.”

27)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4) 3월 24일(정미). “新造密符.”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4) 3월 27일(경술). “分遣宣傳官李之房·李長生·辛允武等于八道, 賜密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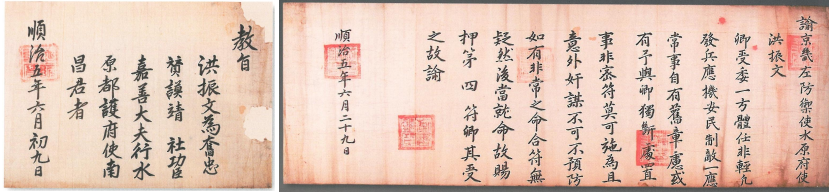
28) 『승정원일기』 241책, 숙종 즉위년(1674) 9월 7일(무진). “李東溟啓曰, 諸道監·兵·水使以下所受密符, 依前例宣傳官, 持標信發遣, 替換新符, 還收舊符以來, 而宣傳官各處分送, 不無弊端, 每道各一人定送, 以爲次第傳授之地之意, 敢啓. 傳曰, 知道.”

29) 『六典條例』 卷之二 吏典 承政院 啓稟. “密符 [四十五部, 加造九部.], … 大喪後, 改造及傳授, 啓辭.”

30) 노인환, 앞의 논문, 2017, 436~437쪽.

31) 『승정원일기』 101책, 인조 26년(1648) 6월 9일(임인). “洪振文爲水原府使.”
『승정원일기』 101책, 인조 26년(1648) 6월 29일(임술). “下直, 水原府使洪振文.”

<그림 5> 1648년(인조 26)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 告身·諭書



* 출처: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늑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2010, 137~138쪽.

1649년(효종 즉위년) 5월 28일에 새로 즉위한 효종은 新舊 밀부의 교체에 대해 우부승지 朴長遠에게 명령하였다. 승정원에서는 효종의 왕명을 유지로 발급하여 홍진문 등의 밀부관에게 전달하였다. 홍진문에게 내린 유지에는 선전관이 새로운 밀부를 가지고 내려가니 이전에 내린 밀부를 직접 합쳐서 확인한 후에 새로운 밀부는 받고 옛 밀부는 견고하게 봉하여 올려 보내라는 것과 밀부의 숫자는 전에 받은 숫자를 고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홍진문은 이전에 인조에게 받은 밀부를 올려 보내고, 효종의 御押이 새겨진 제4부의 밀부를 받아서 佩用하였다.

<그림 6> 1649년(효종 즉위년)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 有旨



* 출처: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늑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2010, 140쪽.

우부승지 朴長遠<착명>

지금 새로운 密符를 전해 주는 일로 선전관이 새로운 標信을 가지고 내려 보냈으니 전에 준 밀부는 직접 합쳐서 증험한 후에 새로운 밀부를 받고 옛 밀부는 도로 견고히 봉하여 올려 보내는데, 신구 밀부를 교체하여 받을 때에 숫자는 전에 따라 고쳐 바꾸지 않았다는 뜻을 경이 잘 알라는 有旨를 내린다.

순치 6년(1649, 효종 즉위년) 5월 28일.

(背面)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이 開拆하라.³²⁾

또한 승정원에서 밀부의 改造에 대하여 啓辭를 올리고 밀부관에게 유지를 보낸 사례는 1724년(영조 즉위년) 9월에 우부승지 李眞淳이 영조에게 올린 계사와 승정원의 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부승지) 이진순이 아뢰기를,

“명소 10부, 밀부 45부, 좌·우포도대장패와 전령패를 합한 4부를 지금 이미 제작하여 모두 봉하여 들었습니다. ... 여러 道의 監司, 統制使·兵使·水使, 각처에 防禦使가 받은 밀부는 己亥(1659년, 현종 즉위년), 甲寅(1674년, 숙종 즉위년), 庚子(1720년, 경종 즉위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매 道에 선전관 각 1인이 표신을 가지고 내려가야 하고, 당초에 준 諭書 중에 次第를 써 넣은 것에 의거하여 나누어 주며 선전관에게 각각 가지고 전하게 하는데, 濟州는 순풍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땅이고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遲速을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곳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 겸하여 갈 수 없으니 경자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하여 보내겠습니다. 새로운 밀부를 전해 주고 옛 밀부를 거두어 오는 것은 일이 매우 중요하게 관계하니 각처에 有旨를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또한 옛 밀부의 좌척을 보내서 선전관에게 밀부를 합친

32) “右副承旨 朴<着名>. 今以新件密符傳授事, 宣傳官持新標信下送, 前授密符, 親自合驗後, 新符領受, 舊符則還爲堅封上送, 而新舊符替受之際, 第數則依前不爲改易之意, 卿其知悉事有旨. 順治六年五月二十八日. (背面)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洪開拆.”

후에 거두어 올 수 있습니다. ... 감히 아되고, 모두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하라.” 하였다.³³⁾

이진순이 영조에게 아뢴 내용을 요약하면, 명소·밀부·전령패 등을 제작한 후에 밀부의 전달은 현종·숙종·경종의 전례에 의거하여 8도의 관찰사와 통제사·병사·수사·방어사 등에게 선전관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전관이 새로운 밀부를 전하고 옛 밀부를 거두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미리 각처에 유지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영조는 전교를 내려 이진순이 아뢴 啓辭의 내용을 윤희하였다. 9월 10일에 이진순은 8도의 관찰사와 통제사·병사·수사·방어사 등에게 영조의 명령을 유지로 작성하였고, 승정원의 서리가 유지를 전달하였으며, 선전관이 밀부를 전달하였다. 이때 영조가 남병사 李順坤과 경상좌수사 韓範錫에게 내린 유지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右副承旨 李眞淳<着名>

새로 제작한 제23부 밀부는 전에 받은 諭書 안에 써 넣은 숫자에 의거한 것으로 선전관이 가져가서 전하게 할 것이니 경은 잘 받고 옛날에 받은 밀부는 합친 후에 올려 보내라는 有旨를 내린다.

용정 2년(1724, 영조 즉위년) 9월 초10일.

(背面) 南兵使 李順坤이 開拆하라.³⁴⁾

33) 『승정원일기』 573책, 영조 즉위년(1724) 9월 10일(경술). “李眞淳啓曰, 命召拾部, 密符肆拾伍部, 左右捕盜大將牌·傳令牌合肆部, 今已造成, 竝爲封入. ... 諸道監司, 統·兵·水使, 各處防禦使所受密符, 當依己亥·甲寅·庚子年例, 每道宣傳官各一人, 持標信下送, 而依當初所授諭書中次第書填分授, 使之各各持傳, 而濟州, 則乃是候風越海之地, 水路險遠, 遲速難期, 他處分授之人, 不可兼往, 依庚子年例別爲定送矣. 傳授新符, 收來舊符, 事係至重, 各處不可不成送有旨. 且送舊符左隻, 使之合符, 然後可以收來. ... 敢啓, 竝此仰稟. 傳曰, 知道, 竝依此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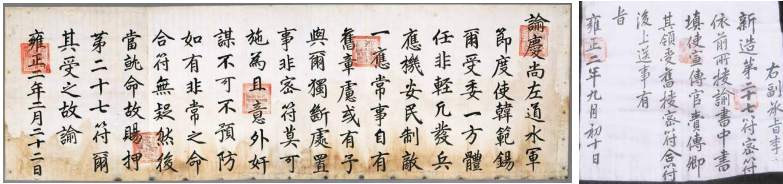
34) “右副承旨李<着名>. 新造第二十三符密符, 依前所授諭書中書填, 使宣傳官資傳, 卿

<그림 7> 1724년(영조 즉위년) 南兵使 李順坤 有旨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 교령류 3-, 2008, 101쪽.

<그림 8> 1724년(경종 4) 2월 慶尙左水使 韓範錫 諭書와
1724년(영조 즉위년) 9월 慶尙左水使 韓範錫 有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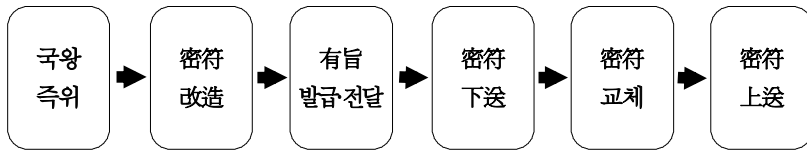
* 출처: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로 만나는 조선시대 수군』, 2014, 8~9쪽.
김학수, 「한범석(韓範錫:1672~1743) 교지(敎旨)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 연구』 43, 경성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89쪽.

1724년(영조 즉위년) 9월에 영조가 남병사 이순곤에게 내린 유지는 앞에서 이진순이 영조에게 아뢰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즉 새로 제작한 제23부의 밀부를 선전관을 통해 내려 보낸다는 것과 옛 밀부를 합쳐서 확인한 후에 올려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경상좌수사 한범석에게 내린 유지는 밀부의 숫자를 제외하면 이순곤에게 내린 유지

其領受, 舊授密符, 合符後上送事有旨, 雍正二年九月初十日. (背面)南兵使李 開拆.”

와 동일하였다. 특히 밀부 숫자는 한범석이 경상좌수사에 임명될 때 받은 유서에 기재된 제27부가 유지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密符의 改造와 교체 과정



밀부의 제도가 시행된 후에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제1부에서 제45부까지 45개의 밀부를 제작하였다. 이후 1800년(순조 즉위년)부터 1864년(고종 1)까지 제46부에서 제54부까지 9개를 추가로 제작하여 총 54개의 밀부를 사용하였다.³⁵⁾ 추가로 제작한 9개의 밀부는 별도로 密匣橫에 봉하여 넣었다가 처음에 제작한 밀부가 부족할 때에 사용하였다. 당시에 궐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符信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時在符信等牌』에도 ‘密符 四十五部’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9개를 더 제작하였다는 의미로 ‘加九’를 기재하였다. 이후 1876년(고종 13) 11월 4일에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하여 符信이

35) 『승정원일기』 1824책, 순조 즉위년(1800) 7월 19일(기해). “韓用鐸啓曰, 宣傳標信三十一部, 開門標信五部, 閉門標信五部, 問安牌七部, 命召十部, 虎符二部, **密符四十五符, 加造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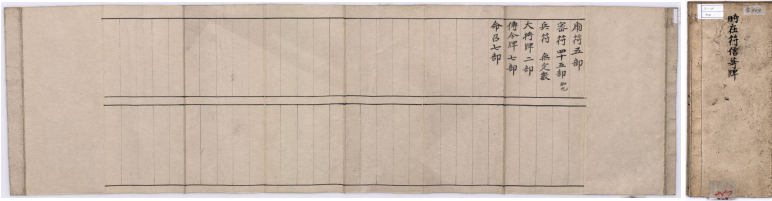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2310책, 헌종 즉위년(1834) 12월 5일(을미). “吳致愚啓曰, 宣傳標信三十一部, 開門標信五部, 閉門標信五部, 問安牌七部, 命召十部, **密符四十五部, 加造密符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승정원일기』 2672책, 철종 즉위년(1849) 7월 5일(경자). “南性教啓曰, 宣傳標信六部, 開門標信三部, 閉門標信三部, 問安牌三部, 先爲造成. 命召十部, **密符四十五部, 加造密符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승정원일기』 2672책, 고종 1년(1864) 1월 10일(임자). “又啓曰, 宣傳標信六部, 開門標信三部, 閉門標信三部, 問安牌三部, 先爲造成. 命召十部, **密符四十五部, 加造密符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모두 불에 훼손되자 다음날 5일에 밀부를 포함한 각종 부신을 승정원에서 새로 제작하였다.³⁶⁾

<그림 10> 『時在符信等牌』



* 출처: 『時在符信等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S03 14 0374)³⁷⁾

밀부의 형태가 左隻과 右隻으로 절반을 나누어 제작된 것은 국왕의 명령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밀부유서에서 ‘非常의 命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후에 마땅히 命에 나아가야 한다(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 然後當就命)’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왕의 御押이 새겨진 밀부의 형태는 大喪을 지낸 후에 반드시 밀부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국왕의 즉위는 왕권의 변화를 의미하였고, 왕권의 변화 속에서 밀부의 개조와 교체를 통해 지방의 군사권도 이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6)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 11월 4일(신유). “初四日. 景福宮災. … 俄頃之間, 諸殿閣蕩然灰燼, 列朝御筆舊物, 一未有收, 大寶及東宮玉印之外, 諸寶符信, 皆燒火.”

『승정원일기』 2832책, 고종 13년(1876) 11월 5일(임술). “傳曰, 符信, 多入於回祿之中矣. 標信問安牌·摘奸牌, 命召虎符·密符·兵符·符驗·馬牌烙印, 令政院新造以入.”

37) 『時在符信等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冊(S03 14 0374)이 筆寫本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지사항은 “折帖 不分卷1帖(4折8面) : 四周單邊, 有界, 5行字數不定, 無魚尾 ; 31.5×122.0cm, 折帖 31.5×11.4cm”이다.

4. 밀부의 운용

가. 밀부관의 유형과 변화

조선시대에 국왕은 密符官, 즉 각 道의 觀察使와 節度使·留守·統制使·統禦使·防禦使·摠戎使에 임명된 관원에게 밀부를 내려주었다.³⁸⁾ 관직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관직이 신설되면서 밀부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원도 점차 증가하였다.

밀부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에 세조는 각 道의 都觀察黜陟使·兵馬都節制使·水軍都安撫處置使에게 밀부를 내렸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도관찰출척사·병마도절제사·수군도안무처치사를 각각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로 관직 제도를 변화함에 따라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밀부를 내렸다.³⁹⁾ 이후 예종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직하지 않아서 절도사에게만 밀부를 주었으나, 1469년(예종 1) 9월 1일에 조정의 논의를 거쳐 다시 8도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에게 모두 밀부를 내려 주었다.⁴⁰⁾

留守는 지역의 행정뿐만 아니라 軍職을 겸직하고 군사를 통솔하였기 때문에 국왕은 유수에게 밀부를 내려주었다. 조선 전기 개성부에 유수를 설치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강화부·광주부·수원부·춘

38)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密符官 [留守·觀察使·統制使·摠戎使·鎮撫使·節度使·防禦使] ”

39)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1466) 1월 15일(무오). “都觀察黜陟使改爲觀察使, … 兵馬都節制使改爲兵馬節度使, 水軍都安撫處置使爲水軍節度使.”

40)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1469) 9월 1일(신사). “左副承旨韓繼純啓曰, 舊法觀察使·節度使, 竝授密符, 近者觀察使不管兵馬, 故只授密符於節度使. 今復立密符, 觀察使·節度使皆授之何如. 上曰, 觀察使·節度使皆授密符, 則兵權不一, 若只授節度使, 儻有不虞之變, 則觀察使無密符, 何以處之. 都承旨權臧啓曰, 觀察使不管兵馬, 不賜爲便. 如或有變, 觀察使豈以無符而坐視乎. 若竝授觀察使, 則職帶兵馬而後可也. 命議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崔恒·洪允成·曹錫文·金價·尹子雲·金國光等議啓, 宜竝授密符. 從之.”

천부에 추가로 유수를 설치하면서 밀부관이 증가하였다. 1627년(인조 5) 강화부에 유수를 설치하였고,⁴¹⁾ 1678년(숙종 4) 10월에 강화부유수가 鎭撫使를 겸직하면서 밀부를 내려주었다.⁴²⁾ 1683년(숙종 9) 광주부에 유수를 설치하고 守禦使를 겸직하였다.⁴³⁾ 1793년(정조 17) 수원부에 유수를 설치하였고,⁴⁴⁾ 1802년(순조 2)에 수원부유수가 摠理使를 겸직하였다.⁴⁵⁾ 1888년(고종 25년) 춘천부에 유수를 설치하고 鎭撫使를 겸직하였다.⁴⁶⁾

관찰사·유수·절도사 이외에 밀부관은 통제사·통어사와 都體察使·都巡察使·巡察使 등이 있다. 통제사와 통어사는 수군의 최고지휘관으로 조선 후기에 설치되어 남해와 서해의 수군지휘관과 수군을 통솔하였기 때문에 밀부를 내려주었다. 통제사는 경상·충청·전라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관으로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선조가 전라좌수사 李舜臣에게 통제사를 겸직시키면

- 41)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1626) 4월 2일(무술). “備局啓曰, 江華留守·郎廳, 當建置, 而群議皆曰, 苟非曾經而諳練, 則不可. 以沈悅除授留守, 郎廳則經歷·都事中一員, 令該曹極擇差出. 答曰, 還都後差除.”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江華府. “《續》 掌治江都. 《增》 原, 都護府, 光海戊午, 陞府尹, 仁祖朝丁卯, 置留守.”
- 42)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10월 17일(갑신). “以江華留守兼鎭撫使. 先是, 尹深建言, 江華與廣州無異, 而獨無密符, 似當變通. 李元禎言, 留守視同內職, 舊無此例. 今別立名號, 如防禦使之例, 始賜密符諭書爲宜. 上命大臣議定其號. 至是乃定.”
- 43)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1683) 1월 28일(경오).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1683) 2월 2일(갑술). “呂聖齊爲廣州留守.”
- 44)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水原府. “《補》 掌治華城 《原》 都護府, 正宗朝癸丑, 置留守, 今移錄.”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1월 12일(병오). “改號水原府爲華城, 御筆揭額于壯南軒. 陞府使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置判官一員佐之.”
- 45)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1802) 2월 7일(무신). “外營軍制釐正別單. [壯勇外使·行宮整理使一員, 留守兼內營與整理所, 既已撤罷, 則外使與整理使之名, 竝減下, 依守禦鎭撫管理使例, 以摠理使稱號, 令該曹啓下.] ”
- 46) 『승정원일기』 2972책, 고종 25년(1888) 4월 19일(경자). “上命書傳教曰, 關防之重, 所以固屏翰而嚴捍衛, … 春川, 乃東北咽喉之最爲要阨, 不可無另置留臺. 鎭禦使, 改以春川府留守兼鎭禦使下批. 畿甸及關東之附近幾邑, 竝使之管攝, 其規例, 一如四都之有屬邑, 諸般制置之方略, 該守臣商確磨鍊, 就議總理大臣稟處.”

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⁴⁷⁾ 이후 『대전회통』에서 통제사는 품계가 종2품이고, 인원이 1員이며, 경상우도수군절도사를 겸직하면서 경상·충청·전라의 舟師를 통솔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⁸⁾ 통어사는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관으로 정묘호란 이후에 강화도에 대한 방어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1632년(인조 10) 9월에 京畿水使에게 통어사를 겸직시키면서 설치되었다.⁴⁹⁾ 1779년(정조 3) 경기수사가 폐지된 후에 통어사는 강화의 鎭撫使가 겸직하였으며, 1789년(정조 13)에 다시 경기수사가 설치된 후에 경기수사가 통어사를 겸직하였다. 이후 『대전회통』에서 통어사는 품계가 종2품이고, 인원이 1員이며, 경기수군절도사를 겸직하면서 경기·황해·충청도의 舟師를 통솔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⁰⁾

도체찰사·도순찰사·순찰사는 軍務로 국왕의 명을 받은 관직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경우에는 도체찰사, 1품 이하는 도순찰사, 종2품은 순찰사로 불리었다.⁵¹⁾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도체찰사로 임명된 柳成龍에게 밀부 제3부와 밀부유

47)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1593) 8월 1일(임오). “以李舜臣兼三道水軍統制使, 本職如故. 朝議以三道水使, 不相統攝, 特置統制以主之.”

48)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續》 宣祖朝, 慶尙道置統制使, 統慶尙·忠清·全羅舟師.”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慶尙道. “水軍統制使一員 [從二品《續》 增置.] … 節度使三員 [正三品 ○二, 左道·右道, 一, 觀察使兼《續》 右道, 統制使兼.] ”

49)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1632) 9월 19일(갑인). “知中樞府事鄭應聖上疏曰, 江都, 卽京城之保障. 脫有虜賊長驅之患, 則舟楫不備, 何策可濟. 請依前規, 復立京江舟師, 定一武將, 整頓待變, 則必無蒼黃顛倒之事. 且以京畿水使, 稱統禦之號, 兼制公清·黃海舟師, 則可能相須而濟矣. … 答曰, 依啓. 赴京船亦令移隸於江都.”

50)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續》 … 仁祖朝, 諸道置鎭營將兼討捕使, 京畿·江原·咸鏡·平安道置防禦使以守令·邊將兼, 京畿置統禦使, 統京畿·黃海·忠清舟師. … 《增》 … ○ 罷京畿水使, 以江華鎭撫使兼統禦使, 以喬桐·永宗防禦使爲統禦營左·右海防將. [正宗己亥. 《補》 己酉, 還置水使兼統禦使.] ”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京畿. “水軍統禦使一員 [從二品《續》 增置. ○水軍節度使兼. 《增》 罷水使, 江華留守兼. 《補》 水軍節度使還兼.] ”

51)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續》 … 宰相以軍務奉命者, 隨品稱號. [議政則都體察使, 一品以下則都巡察使, 從二品則巡察使, 三品則察理使.] ”

서를 내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가 도순찰사 또는 순찰사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밀부를 내려주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지역에 설치한 방어사에게도 밀부를 내려주었다. 국왕이 방어사에게 밀부를 내려준 기록은 선조 연간부터 확인할 수 있다. 1606년(선조 39) 8월에 방어사에게 정해진 시기에 유서와 밀부를 내려주지 않은 승정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다.⁵²⁾ 1638년(인조 16) 5월에 비변사에서 제주목사에게 방어사를 겸직하고 밀부를 내려줄 것을 청하자 인조가 윤허하였다.⁵³⁾ 조선 후기에 방어사는 坡州·永宗·鐵原·濟州·三和·宣川·昌城·江界·吉州에 총 9명의 방어사를 설치하면서 밀부관의 인원이 점차 증가하였다. 끝으로 1624년(인조 2)에 설치된 총융청의 摠戎使에게도 국왕은 밀부를 내려 주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은대편고』에 수록된 밀부관은 총융사부터 길주방어사까지 총 37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나. 밀부의 전달과 반납

국왕이 밀부관에게 밀부를 전달하는 장소는 궁궐과 부임지로 나눌 수 있다. 밀부를 궁궐에서 전달하는 경우는 밀부관이 국왕에게 肅拜하고 下直하는 朝辭(또는 辭朝)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밀부관

52) 『선조실록』 202권, 선조 39년(1606) 8월 10일(병오), 8월 11일(정미).

53)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1638) 5월 3일(을축). “備局請以濟州牧使, 兼防禦使, 給密符, 從之.”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3~14쪽.

54) 『銀臺使攷』 「兵房攷」 密符. “佩符官凡三十七.[摠戎使·水原留守·廣州留守·江華留守·開城留守·京畿監司·喬桐水使·坡州防禦使·永宗防禦使·江原監司·鐵原防禦使·忠清監司·忠清兵使·忠清水使·黃海監司·黃海兵使·黃海水使·全羅監司·全羅兵使·全羅左水使·全羅右水使·濟州防禦使·平安監司·三和防禦使·宣川防禦使·昌城防禦使·江界防禦使·慶尙監司·慶尙左兵使·慶尙右兵使·慶尙左水使·統制使·咸鏡監司·南兵使·北兵使·吉州防禦使]”

은 부임하기 전에 국왕에게 숙배와 하직을 위해 入侍하였다.⁵⁵⁾ 국왕은 밀부관의 履歷과 所懷를 묻거나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당부하였고, 밀부관은 자신의 이력과 소회를 아뢰거나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국왕과 밀부관 사이에 대화가 끝난 후에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인 경우에는 입시한 승지가 敎書를 宣讀한 후에 교서를 먼저 전달하였고 이어서 밀부와 밀부유서를 내려주었다. 관찰사·유수·통제사 등이 朝辭할 때까지 교서가 製進되지 않을 경우에는 밀부와 밀부유서를 먼저 전달하고 교서는 추후에 傳수하기도 하였다.⁵⁶⁾ 절도사·방어사에게는 교서가 없었기 때문에 밀부와 밀부유서를 내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국왕이 밀부관에게 물러날 것을 명하면, 밀부관이 물러나면서 朝辭하는 과정을 마치고 부임지로 향했다.⁵⁷⁾

밀부관이 숙배하고 하직할 때에 승정원은 密符單子(또는 符單子)를 즉시 국왕에게 入啓하고 밀부 숫자를 결정하였다.⁵⁸⁾ 승정원은 밀부를 보관하는 密匣을 아뢰어 청한 후에 유서와 함께 密匣을 들였다.⁵⁹⁾ 밀부단자를 작성해서 들고 밀갑을 修正하는 과정은 승정

55) 『승정원일기』 1208책, 영조 38년(1762) 7월 18일(무인). “傳于南泰會曰, 忠淸監司 入侍, 密符入侍傳授.”

56) 『승정원일기』 657책, 영조 4년(1728) 3월 15일(을축). “柳綏啓曰, 京畿監司李廷濟, 謝恩後仍爲辭朝事, 命下矣. 諭書·密符, 今方依例傳授, 而敎書時未製進, 追後傳授之意, 敢啓. 傳曰, 知道.”

57) 『승정원일기』 1575책, 정조 9년(1785) 1월 22일(임신). “上曰, 全羅監司, 黃海水使 入侍. 賤臣承命出, 與全羅監司李在學, 黃海水使李壽鵬偕入進伏. 上問壽鵬履歷, 壽鵬進奏履歷. 上命聖彬宣諭, 傳給諭書·密符, 訖, 命先退.”

58) 『승정원일기』 715책, 영조 6년(1730) 12월 6일(경자). “儼曰, 密符置簿案冊, 留置 政院, 凡有親授事, 輒書密符單子以入, 事體不輕而重.”

59)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佩符官下直, 則符單子, 卽爲入啓, 待第幾符填下後, 密匣啓請, 諭書同爲入之, 而仍爲啓請諭書寶. [如有敎書, 則同時入之, 又請施命之寶.] ”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密符官<留守·觀察使·統制使·摠戎使·鎮撫使·節度使·防禦使>下直時<摠使無下直.>, 符單子入啓, 待第幾符填下後, 密匣啓請, 諭書同爲入之, 仍啓請諭書寶.”

원의 事變注書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사변주서는 密匣을 수정할 때에 남아있는 밀부와 기존에 내려준 밀부를 기록한 密符置簿冊⁶⁰⁾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확인하였다.⁶¹⁾ 또한 밀부관이 하직할 때 남아있는 밀부가 단지 3개만 있으면,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微稟하고 국왕의 결정을 기다려 밀부단자를 입게하였다.⁶²⁾

승정원은 밀부치부책·밀부단자·밀갑을 통해 밀부 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밀부치부책을 수정하지 않거나 밀부단자에 잘못 기재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다. 1649년(인조 27) 3월 경기우방어사에게 밀부를 내려줄 때에 注書가 밀부치부책을 수정하지 않아서 제30부가 중복으로 발급되자 해당 주서를 파직하였다.⁶³⁾ 1755년(영조 31) 8월에 총융사에게 밀부를 내려줄 때에 주서가 밀부단자에 잘못 기재하고 입게하여 제23부가 중복으로 발급되자 해당 주서를 從重推考하였다.⁶⁴⁾

밀부를 부임지에서 전달하는 경우는 국왕이 밀부관에게 除朝辭赴任의 명을 내린 경우이다. 제조사부임은 지방 관원이 다른 지방의 관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도리가 멀고 官事가 긴급할 경우에 국왕에게 啓稟한 후에 朝辭하는 것을 면제하고 부임하는 제도이다.⁶⁵⁾

60) 密符置簿冊은 密符冊, 密符案, 密符置簿, 密符置簿案, 密符置簿案冊, 密符置簿官案, 密匣冊 등으로 명칭이 다양한 용례를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符單子書入及密匣修正等節, 事變注書專管次知. [密匣修正時, 完符與事變符冊, 一一較準.] ”

62)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密符官下直時, 完符只存三箇, 則微稟, 待發落, 符單子入啓.”

63) 『승정원일기』 105책, 인조 27년(1649) 3월 18일(정축). “政院啓曰, 京畿右防禦使長湍府使金逸所受密符, 第三十符書下矣. 第三十符, 全南兵使李元老, 曾已受去, 而密符案不爲修正, 仍爲書入, 以致如此, 臣以該房, 不察之失, 在所難免, 不勝惶恐待罪. 不修正當該注書推考, 密符單子, 改付標以入, 諭書當爲改書, 故前件還入爻周之意, 敢啓. 傳曰, 勿待罪. 當該注書罷職. 應罷注書鄭時謀.”

64) 『승정원일기』 1122책, 영조 31년(1755) 8월 12일(계축). “鄭基安啓曰, 今此摠戎使李章吾所授密符, 第二十三符啓下矣. 修正次, 考見密符冊子, 則二十三符, 忠清水使任時尙, 已爲受去矣. 密符單子, 誤爲書入, 致有大段差誤之失, 當該注書, 從重推考, 原單子改修正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湖西에서 영남·호남, 海西에서 關西, 관서·관동에서 北道, 관동에서 영남·호서·해서로 부임하여 여정이 서로 가까운 경우에 제조사부임을 허락하였고, 1개의 道를 넘는 경우에는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다.⁶⁶⁾

밀부를 부임지에서 전달하는 과정은 이조 또는 병조에서 관찰사·절도사·방어사의 제조사부임에 대하여 국왕에게 啓目を 올려 啓下를 받았다. 이어서 승정원은 밀부를 仍佩하거나 傳授하는 것에 대해 啓辭를 올려 국왕의 비답을 받았다.⁶⁷⁾ 즉 밀부관이 재조사부임하면 기존에 받은 밀부를 그대로 佩用하였다. 그러나 밀부관이 아닌 관원이 밀부관에 임명되면 승정원의 서리가 새로운 밀부를 전달하였다. 이후 1781년(정조 5) 3월에 좌부승지 趙時偉의 筵奏로 인하여 선전관이 밀부관에게 밀부를 전달하였다.⁶⁸⁾ 또한 전임관에게 준 밀부를 후임관이 인수인계 받는 사례도 있었다.⁶⁹⁾ 승정원의 계사에 대한 국왕의 비답이 내려지면, 교서·유서 또는 유서를 正書한 후에

65) 노인환, 앞의 논문, 2016, 302쪽.

『大典會通』吏典 除授. “(續) 外官之移擬他職者, 道里遙遠, 官事緊急, 則啓稟, 除朝辭赴任. [餘勿輕許]”

66) 『六典條例』「吏典」吏曹 總例. “外官之移除他職者, 湖西之於兩南, 海西之於關西, 關西·關東之於北道, 關東之於嶺南·湖西·海西, 程途相近處, 除朝辭赴任. [越一道, 則毋得輕許.]”

67) 『六典條例』「吏典」承政院 啓稟. “道帥臣·防禦使, 以外任移拜除朝辭啓目, 則本院, 以密符仍佩或傳授及教諭書下送之意, 啓辭.”

68)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1590) 3월 7일(경진). “承旨趙時偉啓言, 密符齎去, 事體至重, 而每當藩關及防禦使, 除朝辭赴任之日, 只使院吏齎傳者, 有非重事體之道. 請自今爲始, 使宣傳官, 奉命齎去, 而院吏則只奉諭書傳宣, 以此定式施行. 教曰, 所奏, 實合予意, 依此定式.”

69) 『銀臺便攷』「兵房攷」除朝辭赴任. “道帥臣·防禦使, 自外任移拜, 除朝辭赴任事, 自該曹啓目啓下, 則本院, 以密符仍佩, 或傳授, 及教諭書下送之意, 啓辭. 若本是佩符之人, 則以前所受仍佩, 若未佩符之人, 古則使院吏齎去密符, 至辛丑, 因承旨筵奏, 使宣使官齎去矣. 自正宗中年, 有以前官所授傳佩之例.”

『승정원일기』 1463책, 정조 4년(1780) 5월 14일(임진). “李度默啓曰, 守禦使金鍾秀, 自鄉上來云, 教諭書, 似當更爲啓下, 牌招傳授, 而此與新除授有異, 在前如此之時, 有前所授密符傳授之例, 今番則, 何以爲之. 敢稟. 傳曰, 前所受密符傳授.”

密符冊과 밀부의 숫자를 비교하여 확인하였고 密匣을 修正할 때에 밀부책에 자세히 기록하였다.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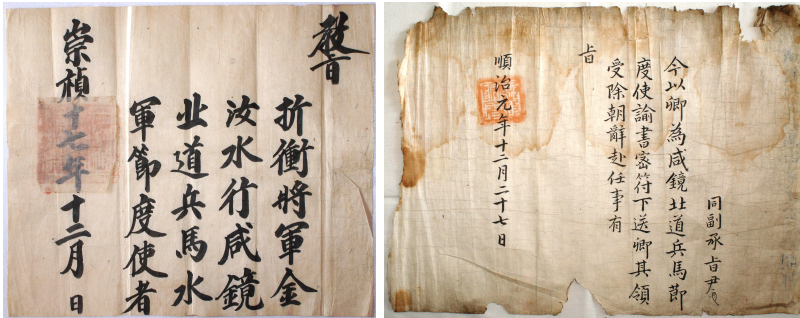
국왕은 밀부의 전달과 제조사부임의 명령을 승정원의 유지를 통해 밀부관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1644년(인조 22)에 咸鏡北道兵馬節度使 金汝水에게 내린 유지를 확인할 수 있다.

同副承旨 尹鳴殷<着名>.

지금 경을 咸鏡北道兵馬節度使에 임명하여 諭書와 密符를 내려 보내니 경은 잘 받고,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有旨를 내린다.

순치 원년(1644, 인조 22) 12월 27일⁷¹⁾

<그림 11> 1644년(인조 22) 咸鏡北道兵馬節度使 金汝水 告身과 有旨



* 출처: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http://hncostma.org/emuseum/service/>)

1644년 12월에 김여수는 慶興府使에서 함경북도병마절도사, 즉 北兵使로 임명되었다. 김여수가 함경도 경흥부에서 북병영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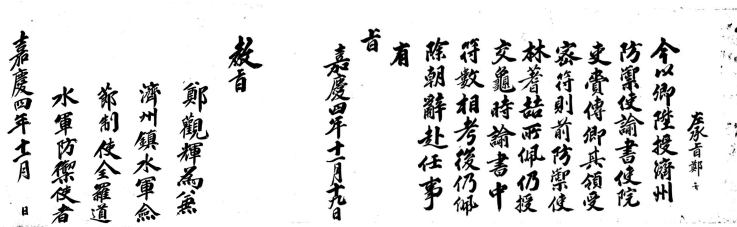
70) 『銀臺便攷』 「兵房攷」 除朝辭赴任. “待啓辭批下, 教諭書或諭書正書, 與事變符冊, 較準符數後, 御覽次入之, 仍爲寶啓請, 安寶齋去. [後日密匣修正時, 消詳懸注於密符冊.]”

71) “同副承旨 尹<着名>. 今以卿爲咸鏡北道兵馬節度使, 諭書·密符下送, 卿其領受, 除朝辭赴任事, 有旨. 順治元年十二月二十七日.”

鏡城都護府로 관직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인조에게 朝辭를 거행하고 부임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북병사는 국경과 인접해 있는 여러 鎭을 관할하는 중요한 관직이기 때문에 除朝辭赴任에 해당하였다. 인조는 승정원의 유지를 통해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된 내용, 유서와 밀부를 내려 보내니 잘 받으라는 내용,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내용을 김여수에게 전달하였다. 승정원의 서리가 김여수에게 유서와 밀부를 전달하였고, 김여수는 狀啓를 올려 유서와 밀부를 祇受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여수의 경우와 같이 국왕이 밀부를 부임지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후임관이 전임관에게 밀부를 인수인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1799년(정조 23) 濟州防禦使 鄭觀輝 告身과 有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1799년(정조 23) 濟州防禦使 鄭觀輝 告身·有旨



* 출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71 - 利川 豊川任氏·楊州 光州鄭氏篇一, 2004, 375쪽, 423쪽.

左承旨 鄭尙愚<着名>.

지금 경을 濟州防禦使로 승진하여 임명한다. 諭書는 院吏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전하게 할 것이니 경은 잘 받고, 密符는 전 방어서 林著喆이 佩用한 것을 그대로 줄 것이니 교대할 때에 유서 안에 밀부 숫자를 상고한 후에 그대로 佩用하며,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有旨를 내린다.

가경 4년(1799, 정조 23) 11월 19일.⁷²⁾

1799년(정조 23) 11월 17일에 정관휘는 제주의 明月萬戶에서 濟州牧使·濟州鎭水軍僉節制使·全羅道水軍防禦使에 임명되었다.⁷³⁾ 정관휘가 제주의 明月鎭에서 濟州牧으로 관직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정조는 정관휘에게 제조사부임의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도승지 李集斗는 전 제주목사가 패용한 밀부를 정관휘에게 주고 유서는 諭書之寶를 安寶한 후에 승정원의 書吏가 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조에게 啓辭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⁷⁴⁾ 이어서 좌승지 鄭尙愚는 정관휘에게 전 방어사 林蓍喆이 패용한 밀부를 그대로 받고,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정조의 명령을 유지로 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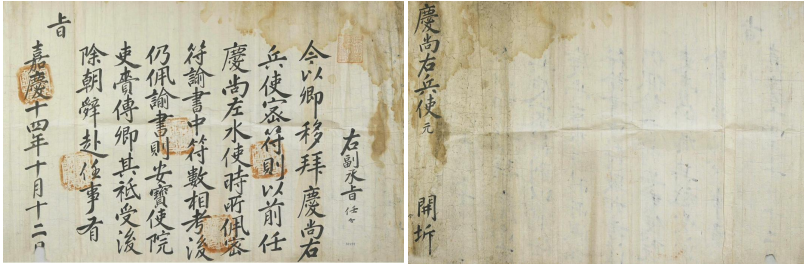
김여수·정관휘의 사례 이외에 밀부관이 관직을 이동할 때에 이전 관직에서 받은 밀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1809년(순조 9)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元永胄 有旨를 확인할 수 있다.

72) “左承旨 鄭<着名>. 今以卿陞授濟州防禦使 諭書使院吏齎傳 卿其領受 密符則前防禦使 林蓍喆所佩仍授 交龜時 諭書中符數相考後仍佩 除朝辭赴任事有旨. 嘉慶四年十一月十九日.”

73) 『승정원일기』 1815책, 정조 23년(1799) 11월 17일(신미).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鄭觀輝.”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4~15쪽.

74) 『승정원일기』 1815책, 정조 23년(1799) 11월 19일(계유). “李集斗啓曰, 明月萬戶 鄭觀輝, 陞授濟州牧使, 除朝辭赴任事, 命下矣. 密符以前牧使所佩, 仍授, 諭書則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그림 13> 1809년(순조 9)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元永胄 有旨



*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152쪽.

右副承旨 任厚常<着名>.

지금 경을 慶尙右兵使로 옮겨서 임명한다. 密符는 전임 慶尙左水使 때 佩用한 밀부를 유서 안에 밀부 숫자를 상고한 후에 그대로 패용하고, 諭書는 安寶하여 院吏로 하여금 가져가서 전하게 할 것이니 경은 공경히 받은 후에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有旨를 내린다. 가경 14년(1809, 순조 9) 10월 12일.

(背面) 慶尙右兵使 元永胄는 열어보라. <着名>⁷⁵⁾

1809년(순조 9) 10월에 원영주는 경상좌수사에서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다.⁷⁶⁾ 원영주는 경상도 내에서 관직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제조사부임의 명령이 있었다. 우부승지 임후상은 순조에게 啓辭를 올려 밀부는 전임 경상좌수사 때에 패용한 밀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순조의 윤허를 받았다.⁷⁷⁾ 또한 임후상은 계사의 내

75) “右副承旨任<着名>. 今以卿移拜慶尙右兵使, 密符則以前任慶尙左水使時所佩密符, 諭書中符數相考後仍佩, 諭書則安寶, 使院吏寶傳, 卿其祇受後, 除朝辭赴任事有旨. 嘉慶十四年十月十二日. (背面) 慶尙右兵使元 開圻<着名>.”

76) 『승정원일기』 1973책, 순조 9년(1809) 10월 10일(신미). “兵批, … 元永胄爲慶尙右兵使.”

77) 『승정원일기』 1973책, 순조 9년(1809) 10월 11일(무술). “任厚常啓曰, 新除授慶尙右兵使元永胄, 以前任慶尙左水使, 時在任所, 而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所

용을 유지로 발급하였고, 원영주는 경상우병사로 관직이 이동되었지만 기존에 패용하던 밀부를 계속 사용하였다.

밀부관은 휴가를 받아서 고향을 갈 경우에 特敎가 없으면 밀부를 차고 왕래할 수 없었다.⁷⁸⁾ 승정원에서는 밀부의 반납 여부를 국왕에게 啓辭를 올려 아뢰었고, 국왕이 밀부를 차고 왕래하라(仍佩往來)는 전교를 내리면 밀부를 차고 왕래하였다.⁷⁹⁾

관직이 교체되어 돌아올 때에 밀부관은 반드시 직접 승정원에 밀부를 반납하였다. 그러나 밀부를 대신 반납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1639년(인조 17) 7월에 京畿水使 羅德憲은 관직이 교체되어 올라왔는데, 肅拜하지 않고 軍官을 시켜서 밀부를 반납하여 처벌받았다.⁸⁰⁾ 또한 관직이 없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궁궐 밖에서 밀부를 직접 반납하였는데, 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卿宰는 重推하고 通政대부는 禁推하였다.⁸¹⁾ 예를 들어 1849년(철종 즉위년) 9월에 전 昌城防禦使 李玄璣는 貶下되어 軍銜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궐에 들어와서 밀부를 직접 반납하여 처벌받았다.⁸²⁾

授密符仍佩, 諭書則安寶, 使院吏齋傳, 何如. 傳曰, 允.”

- 78) 『大典會通』 「兵典」 符信. “《續》… ○ 身帶將任者, 無論佩召·佩符, 毋得處城外. [受由下鄉者, 密符, 非有特敎, 不得仍佩往來.] ”
- 79) 『승정원일기』 490책 숙종 41년(1715) 10월 15일(정축). “政院啓曰, 判尹閔鎮厚, 以掃墳事受由, 今方下去驪州地, 所授守禦使密符, 不敢以佩以去, 來詣還納,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佩往來.”
- 80) 『승정원일기』 703책, 인조 17년(1639) 7월 19일(갑술). “朴守弘啓曰, 凡兵·水使遞來者, 復命之日, 親納密符, 乃是規例, 而京畿水使羅德憲, 遞任上來, 不爲肅拜, 使其軍官, 來呈密符, 其不識事體甚矣. 請從重推考. 傳曰, 允.”
- 81) 『大典會通』 「兵典」 符信. “《續》… ○ 將臣·藩臣·帥臣遞歸, 密符·命召, 必親納政院. [或無職, 或有故者, 親納闕外, 不遵命者, 卿宰重推, 通政禁推, 守職者以本資論.] ” 김진욱, 앞의 논문, 2010, 210~212쪽.
- 82) 『승정원일기』 2491책, 철종 즉위년(1849) 9월 6일(경자). “申錫愚啓曰, 前昌城防禦使李玄璣, 貶下之後, 時無軍銜, 而遽然入來, 親納密符. 揆以事體, 極爲疎忽, 不可無警,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밀부관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밀부를 가지고 와서 반납하면 잠시 승정원에 머물러 두겠다는 뜻으로 入稟하고 다음 달 密匣을 수정할 때에 같이 수정하여 넣었다.⁸³⁾ 또한 죄를 지은 밀부관을 잡아올 때에 선전관을 파견하여 밀부의 좌척과 우척을 합친 후에 밀부관을 잡아 오는 것이 규례였다. 그러나 현종 연간에 선전관 대신에 의금부도사를 파견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간사한 뜻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례에 따라 선전관을 파견하였다.⁸⁴⁾

밀부의 전달과 반납 과정은 규정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왕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유지를 통해 밀부를 전달하는 방식을 먼저 밀부관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대전회통』 등의 법전에서 밀부의 반납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밀부가 군사권을 운용할 때 사용하는 符信이기 때문에 밀부의 전달과 반납을 철저하게 시행한 것이다.

다. 밀부의 인수인계 관리

승정원에서는 밀부를 반출하거나 반납할 때에 인수인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注書가 密符置簿冊을 수정하여 보관하였다.⁸⁵⁾ 숙종 연간

83)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佩符官身死, 密符來納, 則姑留本院之意入稟. [封付房壁.] 易月後, 有密匣修正之時, 一體修正以入. [自入來之日, 如有符單子書入之時, 則依例書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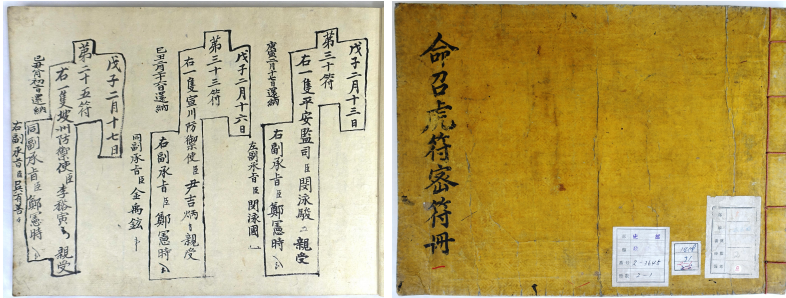
84) 『승정원일기』 198책, 현종 7년(1666) 11월 23일(기해). “又所啓, 在前則受密符之官, 拿來之時, 必有先遣宣傳官合符之舉, 而近例則只送禁府都事拿來矣. 諭書中有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 然後就命之教, 而不待合符, 徑先就命, 非所以防意外之奸也. 不遣宣傳官, 雖除一時虧傳之弊, 日後之慮, 恐有大於此矣. 上曰, 此事予嘗欲言之而未果矣, 諭書中非常之命云者, 正謂拿來等事也. 不合符則不可就命, 今後政院, 依舊例, 發遣宣傳官合符, 然後拿來, 而以此定奪之意, 爲先下諭於各道監司, 仍爲分付於所管有密符之官, 俱皆知悉, 可也.”

85) 『승정원일기』 598책 영조 1년(1725) 8월 8일(계유). “李箕鎮啓曰, 監·兵使密符, 受去後, 院上密符案, 注書例爲一一修正.”

에 밀부치부책을 수정하는 규정은 某官親受의 아래에 빈 공간을 두고, 다른 날 밀부를 반납할 때에 빈 공간에 수정하였다. 주서가 밀부치부책을 잘못 수정할 경우에는 標를 붙이고 小啓字를 踏印한 후에 수정하였다.⁸⁶⁾

밀부치부책은 1888년(고종 25)부터 1895년(고종 32)까지 국왕이 발급한 命召·虎符·密符에 대해 반입하고 반출한 내역을 수록한 『命召虎符密符冊』이 현전하고 있다. 『명소호부밀부책』에는 밀부를 전달받거나 반납할 때에 해당 밀부관의 관직·성명·着名과 담당했던 승지의 성명·착명을 수록하여 밀부의 반입과 반출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그림 14> 『命召虎符密符冊』



* 출처: 『命召虎符密符冊』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45)

『명소호부밀부책』에서 밀부를 전달할 때에 기재 방식은 제1행에 간지·월·일의 순서로 전달한 날짜를 기재하고 제2행에 반출하는 밀부의 숫자를 第幾符로 기재하였다. 제3행에 밀부를 전달한 사실

86) 『승정원일기』 509책 숙종 44년(1718) 9월 9일(을유). “南道揆啓曰, 密符冊修正之規, 案某官親受之下, 存其餘地, 以備他日還納時修正矣. … 今此誤修正處, 不得不付標還納, 自內踏小啓字以下, 然後依次序改修正以入, 似合事宜, 敢啓. 傳曰, 依啓.” 『命召虎符密符冊』에는 標와 小啓字이 없으며, 잘못 수정한 부분을 刀擦한 후에 수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을 ‘右一隻+官職+臣+姓名+着名+親受’로 기재하였고, 제4행 하단에 밀부의 전달을 담당할 승지가 ‘某承旨+臣+姓名+着名’으로 기재하였다. 이때 밀부를 인수인계한 밀부관과 담당승지가 모두 着名을 하여 서로 확인하였다.

밀부를 반납할 때에 기재 방식은 먼저 승정원의 注書가 밀부의 전달 기록에 선으로 둘레를 그린 후(墨圈)에 둘레 외곽의 제4행 상단에 ‘간지·월·일+還納’을 기재하고, 제5행 하단에 밀부의 반납을 담당할 승지가 ‘某承旨+臣+姓名+着名’으로 기재하였다. 『명소호부 밀부책』에서 밀부관과 담당승지의 착명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모두 注書가 작성하였다.

밀부의 전달과 반납 사례는 察理使·兼濟州牧使 李奎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1년(고종 28) 8월에 이규원은 찰리사·검제주 목사로 임명되었고, 8월 20일에 밀부유서와 밀부 제25부를 직접 받은 후 『명소호부밀부책』에 着名하였다. 이때 담당했던 우부승지 李容善이 밀부를 전달한 후에 착명하였다. 이후 1894년(고종 31) 7월에 이규원이 軍務大臣으로 임명되었고,⁸⁷⁾ 11월 14일에 승정원에 직접 밀부 제24부를 반납하였다. 이때 담당했던 右副承宣 李采淵이 밀부를 받은 후에 착명하였다.

87) 『승정원일기』 3048책, 고종 31년(1894) 7월 15일(기축). “傳于趙鼎九曰, … 軍務大臣, 李奎遠差下.”

<그림 15> 1891년(고종 28) 察理使·兼濟州牧使 李奎遠 諭書와 『命召虎符密符冊』密符 第25符 전달·반납 기록



* 출처: 국립제주박물관, 『19세기말 제주의 게임사령관 察理使 李奎遠』, 2004, 76쪽.

밀부관에게 밀부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선전관에게 밀부를 전달할 경우에는 밀부를 가지고 가는 선전관이 『명소호부밀부책』에 착명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고종 27) 3월에 李在護는 경상좌수사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이전 부임지인 法聖鎭에 있었다. 4월 4일에 우승지 李容植은 선전관이 밀부를 전달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啓辭를 올려 고종의 允허를 받았다.⁸⁸⁾ 4월 5일에 선전관 權永洙는 이재호에게 전달할 밀부 제8부를 우승지 이용직에게 전해 받았다. 승정원의 주서는 『명소호부밀부책』에서 ‘右一隻’ 아래에 ‘慶尙左水使臣李在護處傳授次 宣傳官臣權永洙賣去’라고 기재하였고, 선전관 권영수가 성명 아래에 着名하였다. 권영수는 경상좌수영으로 밀부 제8부를

88) 『승정원일기』 2995책, 고종 27년(1890) 3월 18일(정해). “兵批, 再政, 以李在護爲慶尙左水使.”

『승정원일기』 2996책, 고종 27년(1890) 4월 4일(계묘). “李容植啓曰, 前法聖僉使李在護, 移拜慶尙左水使, 有除朝辭赴任之命下矣. 密符則使宣傳官齋傳, 諭書安寶, 使院吏齋傳, 何如. 傳曰, 允.”

가지고 가서 경상좌수사 이재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밀부 제8부는 1890년 11월에 경상좌수사에 임명된 金中鉉에게 인수인계되었다. 김중현도 이재호와 마찬가지로 법성진에서 경상좌수영으로 재조사부임하였고, 이재호에게 밀부 제8부를 전달받아서 경상좌수사의 재임 기간 동안에 패용하였다.⁸⁹⁾ 1891년(고종 28) 7월에 김중현은 전라병사에 임명될 때에도 경상좌수사 때 받은 밀부 제8부를 그대로 패용하고 재조사부임하였다.⁹⁰⁾ 『명소호부밀부책』에는 ‘第八符’ 아래에 ‘辛卯八月初八日 全羅兵使金中鉉除朝辭仍佩’가 기재되었다. 즉 밀부관이 조사를 면제하고 부임할 경우에는 ‘第幾符’ 아래에 간지·월·일과 移拜된 관직, 그리고 ‘除朝辭赴任仍佩’를 기재하였다. (<그림 16-①> 참고)

『명소호부밀부책』에는 밀부의 右隻 이외에 左隻을 인수인계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1888년(고종 25) 8월에 宣川府使·兼宣川防禦使에 임명된 吳順泳은 9월 6일에 밀부 제40부의 우1척을 전달하였다. 이후 1890년(고종 27) 죄를 지은 오순영의 밀부를 빼앗아 반납하기 위하여 1월 6일에 우부승지 金疇鉉은 선전관 金東振에게 밀부 제40부의 좌1척을 전해 주었고, 김동진은 밀부를 직접 받고 著名하였다. 같은 날에 김동진은 밀부 제40부의 좌척와 오순영이 받은 우척을 모두 반납하였다. 주서는 『명소호부밀부책』에서 밀부 제40부의

89) 『승정원일기』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20일(병술). “兵批, … 金中鉉爲慶尙左水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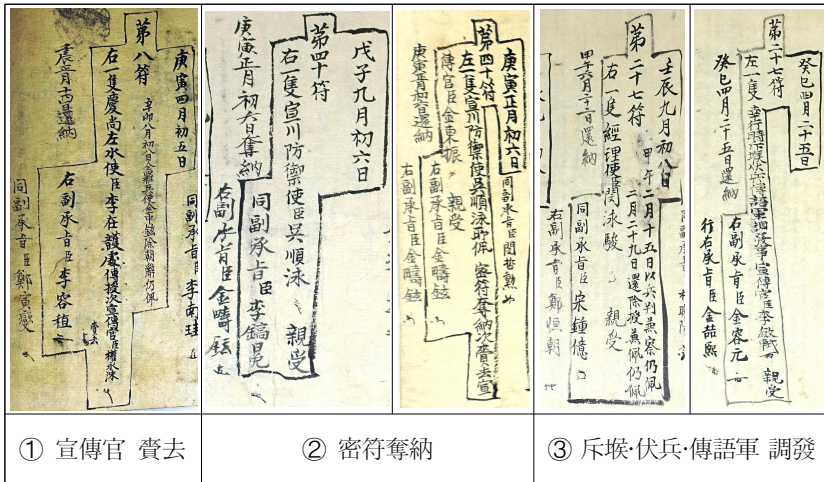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29일(을미). “趙東協啓曰, 法聖前僉使金中鉉, 移拜慶尙左水使,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水使李在護所受仍佩, 諭書則安寶使院吏齋傳, 何如. 傳曰, 允.”

90) 『승정원일기』 3011책, 고종 28년(1891) 7월 29일(신묘). “兵批, … 金中鉉爲全羅兵使.”

『승정원일기』 3012책, 고종 28년(1891) 8월 15일(병오). “韓麟鎬啓曰, 濟州牧使鄭龍基移拜慶尙左水使, 慶尙左水使金中鉉移拜全羅兵使,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竝以前所受仍佩, 諭書則安寶, 使院吏齋傳, 何如. 傳曰, 允.”

좌척과 우척이 기재된 곳에 선으로 둘러를 그렸다(墨圈). 이어서 좌척에는 선전관이 정상적으로 반납하였기 때문에 ‘庚寅正月初六日還納’으로 기재하였으나 우척에는 밀부를 빼앗아 반납하였다는 의미로 ‘庚寅正月初六日奪納’으로 기재하였다. 좌척과 우척을 기재한 곳에는 밀부의 반납을 담당했던 우부승지 김주현이 모두 착명하였다. (<그림 16-②> 참고)

<그림 16> 『命召虎符密符冊』 사례



국왕이 밀부관의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선전관에게 밀부의 좌척을 인수인계한 내용도 『명소호부밀부책』에 기재되었다. 1893년(고종 30) 5월 1일에 고종이 明陵·翼陵·弘陵에 親祭를 지내기 위해 幸行할 예정이었다.⁹¹⁾ 4월 25일에 親軍經理廳에서 草記를 올려 고종이 幸行할 때에 친군경리청에 속한 斥埃·伏兵·傳語軍을 調發

91)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5월 1일(임오). “詣明陵·翼陵·弘陵, 行親祭. 王世子隨詣, 行亞獻禮.”

하기 위하여 標信과 密符를 내어주기를 요청하여 고종의 윤험을 받았다.⁹²⁾ 같은 날에 선전관 李敏軾은 親軍經理使 閔泳駿이 패용하는 밀부 제27부의 좌척을 우부승지 金容元에게 전달받았다. 그리고 『명소호부밀부책』에서 제27부의 ‘左一隻’ 아래에 ‘幸行時 斥堠·伏兵·傳語軍調發事 宣傳官臣李敏軾 親受’를 기재하였고, 밀부를 인수인계한 우부승지 金容元과 선전관 李敏軾이 착명하였다. (<그림 16-③> 참고)

『명소호부밀부책』과 같이 밀부를 관리하는 密符置簿冊에 주서가 墨圈을 잘못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1730년(영조 6) 12월 3일에 전 전라도관찰사 閔應洙가 밀부를 반납하여 주서가 밀부치부책을 수정할 때에 민영수의 親受를 기재한 곳 대신에 그 아래쪽인 黃海水使 具樹勳에게 잘못 墨圈하여 곧바로 刀擦하였다. 이에 대해 동부승지 鄭羽良은 해당 주서를 推考하고 본인은 살피지 못한 죄로 황공하여 待罪하겠다는 내용으로 啓辭를 올렸다. 영조는 주서의 추고는 윤험하였으나 정우량의 대죄는 윤험하지 않았다.⁹³⁾

『명소호부밀부책』을 통해 밀부를 인수인계할 때에 승정원의 주서와 승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서는 밀부의 전달과 반납 내용을 기재하였고, 반납할 때에 전달한 내용을 墨圈하여 실질적으로 밀부의 인수인계를 관리하였다. 밀부의 전달과 반납에서 대부분 우부승지와 동부승지가 착명하여 하위의 승지가 밀부의 인수인계를 감독하였다. 『명소호부밀부책』을 통해 밀부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92) 『승정원일기』 3033책, 고종 30년(1893) 4월 25일(정축). “又以親軍經理廳言啓曰, 今此幸行時, 本廳屬高陽境斥堠·伏兵·傳語軍, 以該邑東伍步軍除出, 整齊後臨時, 請出標信·密符徵發之意, 已爲草記蒙允矣.”

93) 『승정원일기』 715책, 영조 6년(1730) 12월 3일(정유). “又啓曰, 前全羅監司閔應洙, 還納密符, 修正冊子之際, 所當墨圈於閔應洙親受置簿之處, 而注書, 誤圈於其下傍黃海水使具樹勳所受置簿處, 旋即刀擦, 不傷字畫, 而莫重密符置簿冊, 有此誤圈之事, 此雖出於一時錯誤, 而不可無警責, 注書推考, 臣亦難免不察之失, 惶恐待罪之意, 敢啓. 傳曰, 依啓, 勿待罪.”

기재한 것과 승지와 주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밀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조선시대 밀부는 국왕의 명령에 의해 병력을 동원할 때 밀부관에게 내려지는 符信이다. 국왕은 밀부의 좌척을 궁궐에 보관하였고, 새로 임명된 밀부관에게 밀부유서와 밀부의 우척을 내려주었다. 국왕은 밀부를 통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병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였고, 아울러 중앙에서 지방의 군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457년(세조 3)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 밀부유서와 『세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세조 연간에 밀부가 시행되었다. 선조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난을 계기로 기존에 밀부관에게 내리는 밀부와 함께 비상시에 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를 추가로 제작하였고, 이후 국왕이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어 야간에 대신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는 ‘命召’라는 부신으로 대체되었다. 1746년(영조 22)에 반포된 『續大典』에 밀부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조선 후기에 고종 연간까지 시행되었다.

밀부는 전면의 중앙에 第一符에서 第四十五符까지 차례로 새기고 좌척에는 左자를, 우척에는 右자를 새겼으며, 후면의 중앙에 국왕의 서명인 御押을 새겼다. 밀부관은 밀부를 반달 모양의 密符匣에 넣고 다시 황색 密符囊에 넣어 철릭이나 군복에 차고 다녔다. 밀부에 새긴 御押 때문에 선대의 국왕이 승하하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 반드시 밀부를 改造하여 교체하였다. 조선 후기에 밀부의 개조와

교체는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啓辭를 올려서 啓下를 받았고, 밀부의 개조와 교체에 대한 국왕의 명령을 승정원에서 有旨로 작성한 후에 밀부관에게 전달하였다.

밀부관은 각 道의 觀察使와 節度使·留守·統制使·統禦使·防禦使·摠戎使 등이 있었다. 관직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관직이 신설되면서 밀부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원도 점차 증가하여 총 37명이 되었다. 국왕은 밀부관이 숙배하고 하직할 때에 궁궐에서 밀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밀부관이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할 경우에 부임지에서 밀부를 전달하거나 전임관의 밀부를 인수인계 받았다. 또한 밀부관이 除朝辭赴任으로 관직을 이동할 때에는 기존에 받은 밀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승정원에서는 밀부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命召虎符密符冊』과 같은 密符置簿冊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밀부가 국왕과 지방 관원 사이에 군사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및 운용되었다.

최근에 조선시대 군사와 무기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 도록에 密符·密符匣·密符囊 등의 도판과 설명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전시 도록에서는 밀부와 兵符의 명칭을 혼동하거나 도판을 잘못 수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符信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밀부 이외에 兵符·命召·虎符·信符·漢符·標信·牌 등 다양한 符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0. 3. 28,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密符, 密符官, 諭書, 有旨, 啓辭, 命召虎符密符冊, 符信

<참고문헌>

『命召虎符密符冊』(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45)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時在符信等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S03 14 0374)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http://hncostma.org/emuseum/service/>)

국립제주박물관,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理使 李奎遠』,
2004.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로 만나는 조선시대 수군』, 2014.

김진옥,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36, 한국고전번역원,
2010. <http://uci.or.kr/G704-001842.2010.36.36.003>

김학수, 「한범석(韓範錫:1672~1743) 교지(敎旨)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연구』 4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http://uci.or.kr/G704-001230.2014..43.007>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9.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
국학중앙연구원, 2015.
<http://uci.or.kr/G704-001808.2015..34.006>

노인환, 「조선시대 觀察使 敎書와 諭書의 문서 행정과 운용」, 『古文
書研究』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http://uci.or.kr/G704-000717.2016.48..020>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규장각』 51,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 서울대학교 규장각, 『經國大典』, 1997.
- 서울대학교 규장각, 『大典會通』 上·下, 1999.
- 서울대학교 규장각, 『六典條例』 上·下, 1999.
- 서울대학교 규장각, 『兩銓便攷·銀臺條例』, 2000.
- 서울대학교 규장각, 『銀臺便攷』 上·下, 2000.
-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2012.
- 육군박물관, 『조선의 군사신호체계 「形名」』, 2014.
- 이강욱 옮김, 『銀臺條例』, 한국고전번역원, 201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71 -利川 豊川任氏·楊州 光州鄭氏篇-, 2004.
-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2010.

(Abstract)

System and Operation of Milbu(密符) in the Joseon Dynasty

Noh, In-hwan

In the Joseon Dynasty, the Milbu(密符), a round shape signal plaque made of wood, was given to the Milbukwan(密符官) when the troops were mobilized by the king's order. This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period of King Sejo. In Sokdaejeon(續大典), which was promulgated in 1746 (King Yeongjo 22), the Milbu-related regulations were legislated and recorded first and were enforced until 1895 (King Gojong 32). Milbu had the first to forty-fifth sections recorded in the center on the front page in order, and Letter Jwa(left) on the left side and letter Wu(right) on the right side and the engraving of kings' signature(Eoap, 御押) on the back page. When a king passed away and the succeeding king was enthroned, the Milbu was replaced with a new one because of the engraved signature of the previous king. In the later Joseon Dynasty, the Milbu was reconstructed and replac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The Seungjeongwon Office submitted Gyesa(啓辭) to the king and received Gyeha(king's approval, 啓下), and then Seungjeongwon compiled the king's order about the reconstruction and replacement into Yuji (Official Letter of King's Command, 有旨) and delivered it to the Milbukwan (official).

There was the Milbukwan office in Gwanchalsa(觀察使), Jeoldosa(節度使), Yusu(留守), Tongjesa(統制使), Tongeosa(統禦使), Bangeosa(防禦使), and Chongyungsa(摠戎使). The king delivered the Milbu to a Milbukwan at the palace when he was leaving the palace. If a Milbukwan was newly appointed and exempted from being present before the king, the Milbu was delivered to him at the place of appointment or he received the Milbu from his predecessor. And when a Milbukwan was appointed to a new official position with an appointment on exemption of being present before the king, he continued to use the Milbu.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handover of the

Milbu, the Seungjeongwon Office wrote and managed Milbuchibuhaek(密符置簿冊) such as Myeongso Hobu Milbuchaek(命召虎符密符冊). Because the Milbu was the medium which connects the military power between the king and local officials, it was strictly managed and operated.

Keywords : Milbu(密符), Milbukwan(密符官), Yuseo(諭書), Yujj(有旨), Gyesa(啓辭), Myeongso Hobu Milbuchaek(命召虎符密符冊), Busin(符信)

